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9746    |
| 의 퇴 인 | 박홍배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6.8.25. |
| 추계번호  | 26D3314    |

##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6조(법인)      | 동남권투자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11조(자본금)    |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3  | 안 제12조(출자)     |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,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중소기업은행이 출자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| 정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하도록 할 수 있음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4  | 안 제18조(임원)     |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인, 부사장 2인, 상임이사 5인 이내, 비상임이사 6인 이내, 감사 1인을 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5  | 안 제21조(이사회)    | 공사에 이사회를 두고(제1항), 이사회는 사장, 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함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6  | 안 제25조(직원의 임면) |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7  | 안 제27조(업무)     | <p>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함(제1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동남권 산업의 개발·육성 및 구조 고도화</li> <li>2. 동남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</li> <li>3. 북극항로 개척과 연계된 조선업, 해양물류 산업, 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, 국제협력 등에 대한 지원</li> <li>4. 동남권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 등 녹색성장 지원</li> <li>5. 동남권에 소재하는 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그 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의 지원</li> <li>6. 동남권에 소재하는 기업의 산업 재편 및 일자리 이동 지원</li> <li>7. 동남권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</li> <li>8. 동남권 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</li> <li>9.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</li> </ol>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| <p>공사는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(제2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금의 대출</li> <li>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투자</li> <li>3. 자산의 매수</li> <li>4. 자금의 차입</li> <li>5. 사채의 발행</li> <li>6.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|                     | 7. 제1호 및 제6호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<br>8. 사채의 인수<br>9. 동남권 발전을 위한 펀드 조성<br>10. 동남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지원<br>11. 정부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가 공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<br>12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부대업무<br>13.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|      |
| 8  | 안 제30조(사채의 발행)      | 공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|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3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|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.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함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9  | 안 제31조(차입)          |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, 한국은행, 지방자치단체, 금융회사,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0 | 안 제36조(손실금의 보전)     |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 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준비금으로도 부족하면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, 그 후에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정책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1 | 안 부칙 제2조(공사의 설립 준비) | 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음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(이하 “준비위원회”라 함)를 설치함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|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임명·위촉함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| 준비위원회는 사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함(제6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| 안 부칙 제3조(설립 비용)     |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## 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6조(법인)          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2  | 안 제11조(자본금)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12조(출자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18조(임원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안 제21조(이사회)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안 제25조(직원의 임면)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  | 안 제27조(업무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  | 안 제30조(사채의 발행)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  | 안 제31조(차입)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 | 안 제36조(손실금의 보전)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 | 안 부칙 제2조(공사의 설립 준비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안 부칙 제3조(설립 비용)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2. 상세 사유

□ 제정안은 동남권 산업의 개발·육성 및 이와 연계된 산업 생태계의 지원, 그 밖에 지역의 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·관리하기 위하여 동남권투자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함)를 설립·운영하려는 것임

- 안 제27조제1항<sup>1)</sup>에 따르면, 공사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남권 산업의 개발·육성, 동남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, 동남권 소재 기업 등의 지원 등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함
- 또한, 제2항<sup>2)</sup>에 따르면 공사는 각 분야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자금의 대출, 증

1) 제27조(업무)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.

1. 동남권 산업의 개발·육성 및 구조 고도화
2. 동남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
3. 북극항로 개척과 연계된 조선업, 해양물류 산업, 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, 국제협력 등에 대한 지원
4. 동남권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 등 녹색성장 지원
5. 동남권에 소재하는 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그 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의 지원
6. 동남권에 소재하는 기업의 산업 재편 및 일자리 이동 지원
7. 동남권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
8. 동남권 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
9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

권의 투자, 자산의 매수, 사채의 인수, 채무의 보증 및 인수, 조사·연구 및 지원, 정부 등의 위탁 사업 등을 수행함

- 또한, 제정안은 제2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, ① 자본금과 정부 등의 지원금(안 제11조 및 제12조)<sup>3)</sup>, 사채(안 제30조)<sup>4)</sup>, 차입금(안 제31조)<sup>5)</sup>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제정안에 따른 공사 설립·운영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구체적 규모,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공사의 인력 규모, 자원 조달의 방식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필요함
-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공사의 설치·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므로, 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

---

2) 제16조(업무) ② 공사는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금의 대출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투자
3. 자산의 매수
4. 자금의 차입
5. 사채의 발행
6.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
7. 제1호 및 제6호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
8. 사채의 인수
9. 동남권 발전을 위한 펀드 조성
10. 동남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지원
11. 정부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가 공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
12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부대업무
13.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

3) 제11조(자본금)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한다.

② 정부는 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다.

③ 자본금의 증액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출자한다.

1. 대한민국 정부
2. 한국산업은행
3. 한국수출입은행
4. 중소기업은행

② 정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주주가 되지 아니한다.

④ 정부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사의 최대주주가 된다.

4) 제30조(사채의 발행) ①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3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5) 제31조(차입)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, 한국은행, 지방자치단체, 금융회사,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.

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- 참고로, 금융위원회·중소벤처기업부·기획재정부 산하 투자·용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정원·자본금·예산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투자·용자 관련 공공기관의 정원·자본금·예산 예시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한국산업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<br>(중소벤처기업창업 및<br>진흥기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투자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산업의 개발·육성, 사회<br>기반시설의 확충, 지역<br>개발, 금융시장 안정 및<br>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<br>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<br>공급·관리 |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,<br>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<br>산업기반의 구축, 경영<br>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<br>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|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<br>부터 위탁받은 자산의<br>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<br>수행   |
| 정원<br>(상임)               | 임원        | 5명(기관장 1명, 이사 3명,<br>감사 1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명(기관장 1명, 이사6명,<br>감사 1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명(기관장 1명, 이사 3명,<br>감사 1명)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원        | 3,416명(일반정규직<br>3,275명, 무기계약직 141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491명(일반정규직<br>1,256명, 무기계약직 235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38명(일반정규직 308명,<br>무기계약직 30명)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계        | 3,42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499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4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평균<br>연봉<br>(2025<br>결산) | 임원        | 기관장: 397,756천원<br>상임이사: 299,353천원<br>감사: 299,353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관장: 362,304천원<br>상임이사: 259,640천원<br>감사: 289,827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관장: 448,500천원<br>상임이사: 336,508천원<br>감사: 329,183천원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원        | 일반정규직: 117,900천원<br>무기계약직: 59,833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정규직: 88,385천원<br>무기계약직: 44,906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정규직: 131,396천원<br>무기계약직: 58,669천원                |
| 자본금                      | 법정        | 30조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조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출자        | 26조 3,165억 5,9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예산<br>(2026<br>예산)       | 인건비       | 512,247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3,958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7,687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운영비       | 62,612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7,774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7,195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비       | 34,236,091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,017,734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,506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차입금<br>상환 | 1,719,989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,300,000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       | 886,323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624,753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10,721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계        | 37,417,262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,094,219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6,109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: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ALIO)의 자료(2026.8.24. 검색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# 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박은비 | 김안나 |

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박은비 | 02-6788-4831 | ebpark@assembly.go.kr |